

구리 도시관리계획(인창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구리 도시관리계획(인창2지구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4. 09. 13.

구 리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1) 교통시설(변경)
- 가) 도로(변경)
- (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3	17	12	일반 도로	집산 도로	168	대로2-3 인창동444-9	소로1-20 인창동432-2	-	경기도고시 제1996-347호 (1996. 12. 18.)	
변경	중로	3	17	12	일반 도로	집산 도로	168	대로2-3 인창동444-9	소로1-20 인창동432-2	-	경기도고시 제1996-347호 (1996. 12. 18.)	가각 조정

(2)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3-17	중로3-17	◦ 도로 가각 부분 선형변경 (연장 및 폭원 변경 없음)	◦ 철도시설, 완충녹지, 어린이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도로시설 가각부분 선형 변경 결정

- 나) 주차장(변경없음)
- 2) 공간시설(변경)
- 가) 녹지

(1)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㉑	완충녹지	완충녹지	인창동 691-1일원	3,436	증)97.8	3,533.8	경기도고시 제1996-347호 (1996.12.18.)	-

(2) 녹지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㉑	완충녹지	◦ 면적변경(증:97.8㎡) - 당초 : 3,436㎡ - 변경 : 3,533.8㎡	◦ 철도 출입구 보도설치 및 어린이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녹지시설 변경 결정

주1. 공원(어린이공원) 조정에 따른 녹지(완충녹지)로 결정 : 증)83.5㎡

주2. 도로(중로 3-17호선) 가각 일부를 녹지(완충녹지)로 결정 : 증)14.3㎡

나) 공원

(1)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㉓	인창13호 공원	어린이공원	인창동 693일원	1,820.7	감)86.7	1,734.0	경기도고시 제1996-347호 (1996.12.18.)	-

(2)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㉓	인창13호 공원	◦ 면적변경(감:86.7㎡) - 당초 : 1,820.7㎡ - 변경 : 1,734.0㎡	◦ 철도시설, 완충녹지, 어린이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 변경 결정

주3. 공원(어린이공원)의 일부를 녹지(완충녹지)로 결정 : 감)83.5㎡

주4. 도로(중로3-17호선) 가각 일부를 공원시설로 결정 : 증)10.8㎡

주5. 철도와 중복된 부분을 공원(어린이공원)에서 해제 : 감)14.0㎡

다) 공공·문화체육시설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(게재생략)

2.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고시 도면 : 따로 붙임(게재 생략)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함.